

V. 현대

1. 한국전쟁

○ 「울진지역 미군관련 희생 사건」(진실과 화해를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결정사안】

‘울진지역 미군관련 희생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와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주민들이 1950년 7월 및 1950년 9월에 미군의 함포사격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그 경위가 불법적이었는지는 규명하지 못하여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와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주민들은 1950년 7월 및 1950년 9월에 미군의 함포사격에 의해 사망하였다. 울진읍 연지리와 울진읍 읍내리 함포 사격은 미 해군 한국지원전대 휘하 순양함 주노우함(Juneau), 블랙스완함(Black Swan), 자마이카함(Jamaica), 헬레나함(Helena), 드헤이븐함(De Haven)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2. 조사결과, 울진읍 연지리와 읍내리에서 미군의 함포사격으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사람은 임순윤(林順允, 다-2655) 등 6명이다. 희생자 6명은 모두 여성으로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네바 제4협약)의 제2편(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6조에서 특별한 보호 및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된노인, 15세 미만의 아동, 7세 미만의 아동의 어머니,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 등의 범주에 해당한다.

3. 조사결과,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사건과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사건은 모두 한국 정부 및 한국 군·경의 민간인 소개·피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경고 없이 한밤중에 가해진 함포사격에 의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판단된다. 함포사격의 경우, 지상군에 의한 공격이나 공중폭격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 모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한밤중에 포격이 이루어져 민가가 파괴되고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들이다.

4. 이러한 점에서 이 두 사건은 군사상 필요가 이로 인해 초래된 민간인 희생과 비례되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으나 미 함포 기록이나 작전지침, 교전지침 등 사건 관련 기록을 충분히 입수 분석하지 못해 불법성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미군과 한국정부가 주민보호와 소개조치, 포격시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의 의무, 적군과 민간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는 사전조치와 교육 등을 소홀히

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이러한 점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 문】

【사건】다-2655호 및 다-3896호, 울진지역 미군관련 희생사건

【신청인】임병식 및 홍현표

【결정일】2010. 6. 30.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조사개요

1. 신청사건개요

임병식(사건번호 다-2655호)은 1950년 7월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에서, 홍현표(사건번호 다-3896호)는 1950년 9월 25일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서 각각 진실규명대상자들이 미 해군의 함포사격에 의해 희생되었다며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였다.

경북 울진군 미군 함포사건으로 분류된 신청건수는 2건, 진실규명대상자는 5명이다. 신청사건의 접수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신청서 접수 상황

연 번	사건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이름 (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 관계	사건 발생일	사건장소	비고
1	2655	2006.03.24	임병식 (林炳植)	임순윤 (林順允)	여	18세	여동생	1950.07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49번지	
2	3896	2006.06.12	홍현표 (洪賢杓)	이간연 (李玕蓮) 임옥선 (林玉仙) 홍정희 (洪貞姬) 홍○○*	여 여 여 여	48세 24세 3세 1세	조모 서모 누나 누나	1950.09.25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653-3	

*홍○○는 출생 전에 사망해 호적이 없음

2. 조사의 근거와 규명과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으며 희생 규모와 희생 경위, 가해 주체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경북 울진지역의 전황 및 미 해군의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 해군의 함포사격에 의해 희생된 사람의 신원, 희생 경위, 희생 규모, 가해 주체 및 불법성 여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3. 조사방법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가. 신청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6월 16일과 2010년 2월 25일에 울진군 미군 함포사건으로 분류된 2건의 신청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3896(신청인 흥현표) 사건은 신청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의 고모와 누나를 대신 조사하였다. 신청인 조사에서는 사건 당시의 전황, 진실규명대상자의 신원, 희생 과정에 대해 목격한 내용, 시신 수습 여부 등을 주로 확인하였다.

신청인 조사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신청인 조사 내용

연 번	사건 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 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1	2655	임병식 (1920)	임순윤	여동생	2010.02.25 신청인 자택	목격	진술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진군 을진읍 읍내리에 거주하던 중 인민군이 을진을 점령하기 전 연지리 독가촌에 거주하는 여동생 임순애(연지리 50번지)의 집으로 피난 갔음. • 피난 온 지 3일째 되던 날 밤 진실규명대상자 임순윤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권갑진의 집(연지리 49번지)에서 자다가 새벽 2시경 함포탄의 파편을 가슴에 맞아 동창생 권갑진과 함께 사망하였음. 당시 연지리 독가촌에는 단 두 채의 집만 있었고 그중 임순윤과 권갑진만 사망하였을 뿐 부상자도 없었음. 시신은 연지2리 공동묘지에 매장하였음. • 포격이 있기 전까지 마을 인근에서 폭탄소리나 총소리를 전혀 들은 적이 없으며 국군이나 인민군도 본 적이 없음. 다만 포격전날까지 마을 앞 바다에 군함이 자주 보였는데 평상시에는 1,000m 정도 떨어져 있었으나 포격 전날 저녁에 약 5~600m 가까이에서 남북으로 오르락내리락하였고 포격이 있던 날 아침부터는 보이지 않았음.
2	3896	홍현표 (1960)	이간연 임옥선 홍정희 홍○○	조모 서모 누나 누나	2009.06.16 서초2동 사무소	목격	진술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홍현표가 사망하여 신청인의 고모인 홍옥순(1936년생)과 신청인의 누나인 홍정숙(1946년생)을 대신 조사하였음. 홍옥순과 홍정숙은 진실규명대상자들과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부상을 입었음. • 을진군 읍내리에 거주하던 중 피난을 갔다가 추석 차례를 지내기 위해 집에 잠시 돌아와 있던 음력 8월 14일(양력 9월 25일) 밤 12시경 집에 함포탄이 떨어져서 집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음. • 이간연과 임옥선은 함포사격에 의해 허벅지 아래 부위에 부상을 입고 출혈 과다로 당일 밤에 사망하였음. 홍정희는 파편에 맞아 배가 터져서 사망하였고 홍○○는 생후 1개월 된 영아로 이름도 짓지 않아 호적에 등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음. • 진술인 홍정숙은 얼굴과 머리에 파편을 맞아 눈 밑에 흉터가 남아 있으며 홍옥순은 아직도 머리에 파편이 박혀 있어 편두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음. 홍옥순의 언니 홍옥자는 영덩이에 파편을 맞아 다리를 절게 되었음.

나.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2월 25일 경북 울진 미군 함포사건을 목격하였거나 진실규명 대상자들의 희생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참고인 4명을 조사하였다. 참고인 조사는 신청인 조사와 마찬가지로 사건 당시의 전황, 진실규명대상자의 신원, 희생 과정에 대해 목격한 내용, 시신 수습 여부 등을 주로 확인하였다.

참고인 조사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참고인 조사 내용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형태	
1	2655	임순윤	이맹균 (남, 27세)	지인	전문	2010.02.25 참고인 자택	• 연지리 이웃마을인 읍남리에 거주하였음. • 연지리 독가촌 앞 바다에 함정이 있어 함포 사격할 당시 포격 소리를 들었으며 그 포격으로 인해 임순윤이 사망하였으며 그 무렵 읍남2리 양성진의 처도 함포사격으로 사망하였음.
2	2655	임순윤	진명화 (남, 21세)	지인	전문	2010.02.25 미래조경 사무실	• 전쟁 중 함포사격에 의해 연지리에 살던 임병식의 여동생 임순윤이 사망하였으며 같은 마을 이재철의 옆집에 폭탄이 떨어져 마을 주민 2~3명 가량이 사망하였음.
3	3896	이간연 임옥선 홍정희 홍○○	진명화 (남, 21세)	마을 주민	전문	2010.02.25 미래조경 사무실	• 옆집에 살던 홍옥순의 가족들이 추석을 맞아 차례를 지내기 위해 피난지에서 잠시 돌아왔다가 집에 폭탄이 떨어져 할머니 이간연, 그의 며느리 임옥선, 어린 딸 홍정희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여자아이 등 4명이 사망하였음.
4	3896	이간연 임옥선 홍정희 홍○○	김영기 (남, 11세)	마을 주민	목격	2010.02.25 미래조경 사무실	• 1950년 9월 25일 새벽에 옆집 홍씨 집에 함포탄이 떨어져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갓난아이를 포함하여 홍씨네 가족 4명이 사망하였음. • 같은 날 진술인의 집 앞 밭과 이웃 김효종의 집에도 폭탄이 떨어졌음. 밭에 떨어진 것은 폭발하였는데 그 자리에 지름 5m 정도의 둥그런 흙이 파였는데 깊이가 어른 키 정도 되었음. 김효종의 집에 떨어진 폭탄은 불발탄이어서 어른 2명이 들고 멀리 저수지에 갖다 버렸음. 불발탄은 소주 대병이나 정종병 보다 크고 굵었음.

신청인은 호적상 1920년생이나 실제로는 1918년생으로 사건 당시 33세였음.

다. 자료 조사

사건의 실재 여부를 밝히기 위해 미군의 전쟁 당시 기록을 조사하였다. 먼저 미 해군역사

센터에 소장되어 있으며 2008년 3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입수한 미 순양함과 구축함의 작전 일지와 미 태평양함대 사령부 중간평가보고를 참조하였으며 관련 전황 및 해군 작전을 살펴보기 위해 여러 책자와 전사를 조사하였다.

참조한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미 순양함과 구축함의 작전일지

Box 77, USS Helena(CA-75) War Diary, June 13 - Oct 28, 1950.

Box 101, USS Toledo(CA-133) War Diary, June 24 - Oct 29, 1950.

Box 69, USS De Haven (DD-727) War Diary, Jan 1 - Nov 3, 1950.

Box 86, USS Mansfield(DD-728) War Diary, June 24 - Sep 30, 1950.

Box 100, USS Theodore E. Chandler(DD-717) War Diary, July 1 1950 - March 14 1951.

(2) 미 태평양함대 사령부 중간평가보고

NARA, RG 428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the NAVY 1947, Formerly Security Classified Reports Relating to Navy and Marine Corps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during the Period June 25-November 15, 1950. Korean War U.S. Pacific Fleet Operations : Commander in Chief U.S. Pacific Fleet Interim Evaluation Report No.1 Period 25 June to 15 November 1950.

(3) Captain Walter Karig, Commander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Battle Report - the War in Korea, Rinehart and Company, New York, 1952.

(4) Malcolm A.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Annapolis :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1957.

(5) Jr. Field James A. & Ernest McNeill Elle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 Korea,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Official U.S. Navy history.3)

라. 현장 조사

신청인 및 참고인과 함께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및 읍내리 현장을 조사하였다. 연지리 독가촌은 해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언덕 지역으로 당시 2채의 집만 서 있었다고 하며 현재는 집은 모두 철거되어 비어 있었다. 한편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현장은 울진초등학교와 울진읍사

무소 중간쯤으로 지금은 마트가 들어서 있다. 연지리 및 읍내리 현장 사진은 [첨부 1]과 [첨부 2]에 수록되어 있다.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및 읍내리 사건 현장 지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4> 해군본부에서는 1985년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발췌 번역,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를 발간하였다.



<그림 14> 사건 현장 지도

II. 조사결과

1. 사건 배경

가. 울진지역 전황

울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4일 만에 인민군 제5사단에 의해 점령된다. 7월 2일에는 울진 시내 재점령을 위해 울진에 투입된 한국군 제3사단 23연대가 왕피천(울진읍 중심지에서 3.5km) 남쪽으로 후퇴했으며 5일에는 울진경찰서 소속 경찰과 함께 평해 방면으로까지 후퇴하게 된다. 이어 12일에는 인민군 제5사단이 영해-영덕 선까지 진출, 한국군 제3사단에서 긴급하게 함포사격을 요청하게 되었다.

7월 21일 한국군 제3사단은 영덕 탈환에 성공했지만 바로 다음날 다시 영덕에서 후퇴하고 만다. 한국군 제3사단이 영덕과 울진을 재탈환하는 것은 그로부터 2달 이상이 지난 9월 25일과 27일이었다.

나. 미 해군의 대응

미 해군 주도의 유엔 해군은 개전 직후 소규모 북한 함정과 해상전투를 수행한 이후, 해상에서 북한군의 함정과 항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은 채 500마일의 북한 해안까지 장악했다. 특히 동해안지역은 거의 전 시기 미 해군의 작전지역이었는데, 미 해군은 기본적으로 북한군의 해상에서의 일체의 활동을 봉쇄하고, 동해안 일대의 철도, 다리 등을 공격하여 공급로를 차단하고자 했다. 이런 봉쇄, 차단작전에 더하여, 함재기와 함포사격을 통해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작전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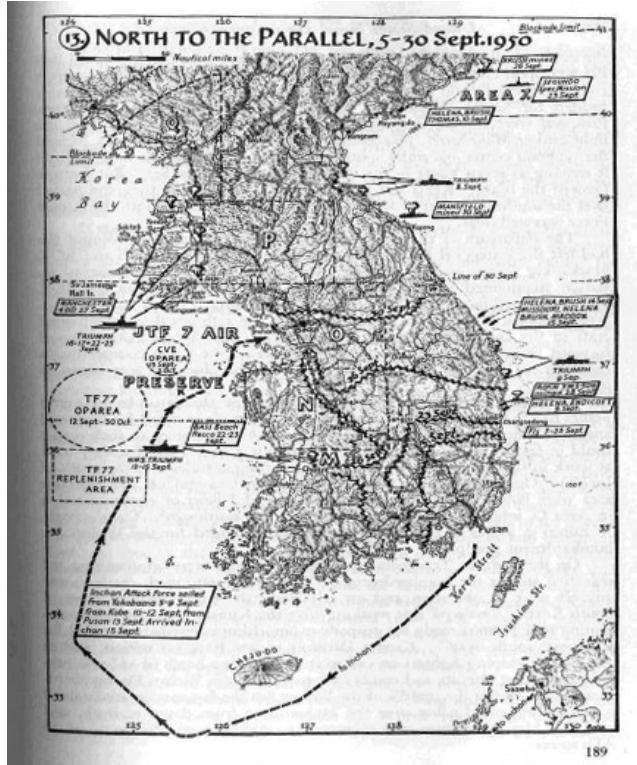
한국전쟁에 미 공군 및 해군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시간으로 1950년 6월 27일 정오경에 내려졌다. C. 터너 조이(C. Turner Joy) 미 극동해군 사령관은 바로 한국전쟁에서 해군이 수행할 임무에 관한 작전명령 5-50을 시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노우함과 제91구축함 분대의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된 제96.5기동전대(Task Group 96.5)가 한국지원전대(South Korea Support Group)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제96.5기동전대는 부산 서쪽의 통영으로부터 동쪽의 울산에 이르는 해안과 인근 도서를 보호하고 삼척과 강릉 사이의 동해안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1950년 6월 30일에는 작전명령 5-50호를 수정, 기존 대만 중립화 임무를 맡고 있던 앤드류(Sir William G. Andrews) 해군소장이 지휘하던 영연방 함대도 터너 조이 미 극동해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하에 한국 해역 작전에 전념하라는 명령이 시달되었다. 앤드류 제독 예하의 함정들은 제96.8기동전대로 지정되고 제96.5기동전대에는 자마이카함(Jamaica), 쇼올헤이븐함(Shoalhaven), 블랙스완함(Black Swan), 알라크리티함(Alacrity) 등이 보강되었다.⁶⁾ 이어서 1950년 7월 3일에는 부산으로 향하는 선박의 호송문제와 북한에 대한 봉쇄작전을 명하는 작전명령 8-50호가 시달되었으며 이로써 제96기동부대의 편성은 더욱 세분화되었다. 먼저 제96.1기동전대가 신설되어 호송전대 임무를 전담하게 되었으며 37도 이남의 봉쇄 및 연안작전은 극동공군과 극동해군으로부터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해군(제96.7기동전대)이 담당하게 되었다. 37도 이북의 해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서해안 지원전대가 각각 편성되었는데 동해안은 히긴스 제독의 제96.5기동전대에게, 서해안은 영연방부대인 제96.8기동전대에게 맡겨졌다.

한국전쟁에서 미 해군의 첫 번째 함포사격은 1950년 6월 29일 이루어졌다. 이날 밤 11시 경 주노우함은 탑조등의 조명 속에서 한국 해군대위의 조언을 받으며 묵호에 대해 삼십 분가량 정밀포격을 실시하였다. 주노우함은 다음날인 6월 30일에도 묵호에 함포사격을 하였으며 7월 2일에는 주노우함, 자마이카함, 블랙스완함 등 제96.5기동전대 소속 순양함들이 북한 해군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문진 연안에서 교전을 벌인 후 강릉 해안의 해안포대에 포격을 가하였다. 주노우함과 블랙스완함은 7월 4일에도 삼척과 주문진 간을 왕복하면서 교량과 해안도로를 포격하였다. 7월 5일 주노우함은 동해안 함포사격 임무를 자마이카함에게 인계하

고 군수품 적재 차 사세보로 향했으며 자마이카함은 블랙스완함과 함께 위도 37도 16분 상의 해안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에 함포사격을 가하고 6일에는 유류저장소와 교량 및 선박, 주문진의 해안포대 등에 함포사격을 진행하였다. 이후에도 주노우함과 드헤이븐함 등 제96.5기 동전대 소속 순양함들은 포항과 37도 선상을 이동하면서 해안에 함포 공격을 계속하였다. 7월 13일에는 주노우함과 드헤이븐함이 지상군의 요청에 따라 해안도로, 울진의 인민군 병력, 목호의 철도역, 삼척의 유류저장소에 함포사격을 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육군 정찰기가 처음으로 이용되어 정확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가운데 주노우함과 드헤이븐함이 울진과 영해 사이의 해안도로에 함포사격을 하였다. 7월 16일과 17일에도 해안도로와 인민군 진지에 대한 함포사격이 이어졌으며 1950년 7월 27일에는 톨레도함과 구축함들이 화력통제반과 항공관측의 지원 아래 38선과 영덕 사이의 표적을 공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함포사건이 발생한 1950년 9월 26일 무렵에도 미 해군은 월미도와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동해안선으로 이동, 포항 장사동에서부터 삼척, 원산에 이르는 동해안 선에서 활발한 작전을 펼쳤다. 9월 12일에는 극동해군사령관 예하에서 작전하던 여러 기동전대들이 통합되었으며 그간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한국군 지원 역할을 해오던 제96.5기동전대는 제95기동부대(Task Force 95)로 승격되었다. 또한 유엔군의 봉쇄 및 호송부대의 전체적인 지휘권은 스미스 해군 소장에게 부여되었으며 서해안기동전대(제95.1기동전대, Task Force 95.1)는 앤드류 제독이, 동해안기동전대(제95.2기동전대, Task Force 95.2) 하트만 제독이 계속 맡아 수행하면서 함포사격 등 지상군 지원을 펼치고 있었다.



<그림 15> 1950년 9월 5~30일 미 해군 배치도

출처 : Jr. Field James A. & Ernest McNeill Elle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 Korea,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Official U.S. Navy history, p189

2. 사건경위

가.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사건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사건경위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 임병식과 진실규명대상자 임순윤은 원래 울진읍 연지리 227번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인민군이 곧 울진을 점령하려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출가한 여동생 임순애가 살던 연지리 50번지로 피난을 갔다. 임순애의 집은 울진군 중심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2km 가량 떨어진 바닷가에 위치하였고 당시 바다에 UN군의 군함이 계속 떠 있었으므로 인민군이 바다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동생의 집으로 피난한 지 3일째 되던 날 밤 새벽 2시경 함포사격이 시작되었다. 함포소리가 들리자 다른 가족들은 이불과 솔뚜껑을 머리에 쓰고 파편을 피하여 무사하였으나 진실규명대상자 임순윤은 옆집에 살던 초등학교 동창생 권갑진의 집에 놀러갔다가 포탄 파편을 맞고 권갑진과 함께 즉사하였다. 신청인은 임순윤이 집에 없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포격이

끝난 후 권갑진의 모친의 연락을 받고 가서 그 집 마당에서 거적에 덮여 있는 임순윤의 시신을 확인하였는데 얼굴 오른쪽 뺨 아래가 떨어져 나갔고 가슴 부위에 옷을 뚫고 파편이 들어간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권갑진의 시신은 그 가족들이 방에 옮겨 두었는데 그 역시 파편에 맞아 사망한 것을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였다고 한다.

사건 현장은 바로 바닷가에 접해 있는데 임순애의 집과 권갑진의 집 등 단 두 채만 있었다. 날이 밝은 후 둘러보니 포탄 파편이 두 집 마당뿐 아니라 해안가를 따라 멀리까지 떨어져 있었으나 임순애와 권갑진 두 사람이 사망한 것 외에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함포사격이 있기 전에는 바다에 군함이 자주 보였는데 평상시에는 1,000m 정도 떨어져 있던 배가 사건 전날 저녁에는 500~6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 남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였으며 사건발생 이후부터는 군함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사건 전후로 인근에서 국군이나 인민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포격에 대한 사전경고 방송이나 빠라도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포격의 이유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인민군이 울진을 점령하러 온다는 소문이 들려 연지리로 피난한 사흘 후 함포사격이 있었다는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과 울진이 인민군 제5사단에 처음으로 점령된 것이 1950년 6월 28일이었다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사건 발생 시기는 1950년 7월 초로 추정된다.³

앞서 살펴보았듯 1950년 6월 26일부터 7월 5일 사이 울진에서 북쪽으로 강릉 선상의 동해안에서 함포사격을 수행한 순양함은 주노우(Juneau)함, 블랙스완(Black Swan)함, 자마이카(Jamaica)함 등이었다. 전쟁사 기록에 따르면 주노우함은 6월 29일과 30일 묵호에 함포사격을 진행하였으며 7월 2일에는 주노우함, 자마이카함, 블랙스완함 등 제96.5기동전대 소속 순양함들이 강릉 해안의 해안포대에 포격을 가하였다. 주노우함과 블랙스완함은 7월 4일에도 삼척과 주문진 간을 왕복하면서 교량과 해안도로를 포격하였다. 7월 5일 주노우함은 동해안 함포사격 임무를 자마이카함에게 인계하고 군수품 적재 차 사세보로 향했으며 자마이카함은 블랙스완함과 함께 위도 37도 16분 상의 해안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에 함포사격을 가하고 6일에는 유류저장소와 교량 및 선박, 주문진의 해안포대 등에 함포사격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해볼 때 울진읍 연지리 함포사격을 가한 순양함은 주노우함, 블랙스완함, 자마이카함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주노우함, 블랙스완함, 자마이카함의 전투일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중 어느 순양함이 어떤 경위로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에 함포사격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3. 신청인 임병식 진술조서(2010년 2월 25일).

나.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사건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울진에서 인민군이 막 후퇴하던 1950년 9월 25일 경(음력 8월 14일)이다. 참고인의 가족들은 울진이 인민군에 점령될 무렵 피난을 갔다가 추석을 맞이하여 차례를 지내기 위해 읍내리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있다가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비행기 폭격이 잦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초저녁까지 방공호에 피신하고 있다가 11시경 방공호에서 나와 안방에 모두 모여 잠이 들었다. 12시경 포탄이 집 문지방에서 떨어지면서 방에 있던 가족들 중 신청인의 조모 이간연, 서모 임옥선, 이복누나 홍정희, 홍○ 등 4명은 사망하였고 신청인의 고모 홍옥순, 홍옥자와 이복누나 홍정숙은 부상을 입었다. 이간연과 임옥선은 파편에 다리를 맞아 허벅지 아래 부위가 다 부서지는 중상을 입고 출혈이 심하여 그날 저녁 사망하였으며 홍정희는 파편에 배를 맞아 배가 터져 사망하였다. 특히 홍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로 미처 출생신고를 하기도 전에 사망하였다. 홍옥자는 엉덩이에 파편이 박혀 평생 다리를 절다가 10여년 전 사망하였고 홍옥순은 머리에 파편을 맞았는데 아직까지도 파편 조각이 머리에 박혀 있으며 홍정숙은 얼굴에 파편을 맞아 눈 밑에 심한 흉터가 남아 있다고 한다.

참고인들은 집과 약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울진초등학교에 인민군 본부가 있었는데 그 곳을 조준하여 포격한 것이 잘못하여 부근에 떨어진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포격 다음날 비행기 폭격과 함께 아군이 진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참고인들은 포격 전에 사전경고 방송이나 빠라 같은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함포사건 발생일자로 추정되는 1950년 9월 24일~9월 27일 사이 울진 근해에서 작전을 수행한 순양함은 USS 헬레나(Helena, CV 75)와 USS 드헤이븐(De Haven, DD 727) 등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USS 헬레나의 전투일지를 살펴보면, 1950년 9월 24일 헬레나함은 한국군 제3사단을 지원하는 작전을 펼쳤다. 헬레나함은 포항 청하면 일대에서 순찰 및 함포사격을 통해 적의 화력을 무력화시키고 포기지나 보급품 등을 공격했다. 9월 25일과 26일에는 일본 사세보 항에서 전력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9월 27일, 다시 동해안선에 복귀, 근접함포지원 활동을 펼쳤다. 헬레나함은 이날 08시 36/41N-129/41E 울진군 후포면 앞바다, 12시 37/08N-129/51E 울진군 북면 앞바다, 20시에는 36/55N-129/28E 울진군 원남면 앞바다 등 하루 종일 울진군 일대의 앞바다에 정박한 채로 한국군 근접함포지원을 수행했다. 다음날인 9월 28일에는 울진에서 북진하여 삼척 앞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USS 드헤이븐의 전투일지를 살펴보자. 9월 24일 드헤이븐함은 일본 사세보항에서 연료 보충 등 전력보충을 받았다. 9월 25일에는 작전명령 1-50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임무를 재확인받았다. 드헤이븐함이 속한 동해제1지원선단의 주요 임무는 동해안 41/50N 이남의 해안 봉쇄, 해안지역에서 아군 화력 지원, 그리고 해안지대의 북한 병력, 철도, 교량, 기타

군사 목표물들을 파괴하는 것이다. 1950년 9월 26일 오전 9시 30분 36/51.5N-129/28.5E(울진군 기성면 앞바다) 일대에서 화력 지원 작전을 시작으로 해안 함포사격을 수행하였으며 16시 05분에는 좌표 1236.7-1557.2 즉 36/54N-129/21.3E(울진군 매화면 왕피천 계곡)을 직접 공격하였다. 16시 07분, 목표물 인근에 한국군이 있었기 때문에 사격을 중지하였다. 드헤이븐함은 이들 한국군과 직접 교신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 공격에 드헤이븐함은 무연화약을 사용하여 5"/38 구경 AAC 5발을 사용하였다. 적군은 흩어진 것으로 보였다. 이후 드헤이븐함은 20시 37/33N 삼척시 목호항 지점까지 북상하여 다음날인 27일까지 37도 선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1950년 9월 24일부터 27일 사이 헬레나함과 드헤이븐함의 전투일지는 신청인 및 참고인이 주장하는 사건발생날짜 무렵, 헬레나함과 드헤이븐함이 울진군 연해에서 활동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두 순양함의 전투일지는 모두 오전 8시경부터 오후 8시경까지의 활동만을 기록하고 있어 신청인 및 참고인이 주장하는 밤 12시경의 활동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함포사격의 가해주체나 함포사격 이유 등은 분명하게 밝힐 수 없었다.

3. 피해 사망자 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을 통해 울진지역에서 미군 함포사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사람은 모두 6명이다.

피해 사망자 명단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피해 사망자 명단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대상자					관련 근거			
		성명(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기타
1	2655	임순윤 (林順允)	여	18세	1950.07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이맹균 진명화	○	
2	미신청	권갑진	여	미상	1950.07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임병식		○	
3	3896	이간연 (李玕蓮)	여	48세	1950.09.25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김영기	진명화	○	제적부
4	3896	임옥선 (林玉仙)	여	24세	1950.09.25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김영기	진명화	○	제적부
5	3896	홍정희 (洪貞姬)	여	3세	1950.09.25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김영기	진명화	○	제적부
6	3896	홍○○ (洪○○)	여	1세	1950.09.25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김영기	진명화	○	

4. 가해주체

1950년 7월 및 9월 미 해군 배치상황과 전황, USS 헬레나함과 USS 드헤이븐함의 전투일지 등을 종합해보면 1950년 7월 초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함포사건은 당시 울진 앞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던 순양함 주노우함, 블랙스완함, 자마이카함 중 하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50년 9월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함포사건은 USS 헬레나함 혹은 USS 드헤이븐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사건의 불법성

울진지역에서 발생한 미 해군 함포사격 사건에 대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부속서(이하 '헤이그 규칙'으로 약칭) 제25조(무방비 마을의 폭격 금지), 제26조(사전경고), 제46조(생명이나 재산의 존중의무),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네바 제4협약)의 제2편(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6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사건과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사건은 모두 한국 정부 및 한국 군·경의 민간인 소개·피난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경고 없이 한밤중에 가해진 함포사격에 의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판단된다. 즉 민간인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이를 예방하거나 줄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데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인다.

특히 함포사격의 경우, 지상군에 의한 공격이나 공중폭격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 모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한밤중에 포격이 이루어져 민가가 파괴되고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 사건은 군사상 필요가 이로 인해 초래된 민간인 희생과 비례되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으나 미 함포 기록이나 작전지침, 교전지침 등 사건 관련 기록을 충분히 입수 분석하지 못해 불법성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III.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와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주민들은 1950년 7월 및 1950년 9월에 미군의 함포사격에 의해 사망하였다.

나. 울진읍 연지리와 울진읍 읍내리 함포사격은 미 해군 한국지원전대 휘하 순양함주노우함(Juneau), 블랙스완함(Black Swan), 자마이카함(Jamaica), 헬레나함(Helena), 드헤이븐함(De Haven) 등에 의해 발생하였다.

다. 조사결과 울진읍 연지리와 읍내리에서 미군의 합포사격으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밝혀진 사람은 임순윤(林順允, 다-2655), 권갑진(權갑진), 이간연(李玕蓮, 다-3896), 임옥선(林玉仙, 다-3896), 흥정희(洪貞姬, 다-3896), 흥(洪, 다-3896) 등 6명이다.

라. 희생자 6명은 모두 여성으로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네바 제4협약)의 제2편(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6조에서 특별한 보호 및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노인, 15세 미만의 아동, 7세 미만의 아동의 어머니,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 등의 범주에 해당한다.

마. 조사결과,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사건과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사건은 모두 한국 정부 및 한국 군·경의 민간인 소개·피난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경고 없이 한밤중에 가해진 합포사격에 의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판단된다.

바. 특히 합포사격의 경우, 지상군에 의한 공격이나 공중폭격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 모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한밤중에 포격이 이루어져 민가가 파괴되고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들이다.

사. 이러한 점에서 이 두 사건은 군사상 필요가 이로 인해 초래된 민간인 희생과 비례되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으나 미 합포 기록이나 작전지침, 교전지침 등 사건 관련 기록을 충분히 입수 분석하지 못해 불법성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아. 그러나 사건 당시 미군과 한국 정부가 주민 보호와 소개조치, 포격시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의 의무, 적군과 민간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는 사전조치와 교육 등을 소홀히 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점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향후 과제

가. 본 사건에서 불법성 여부는 규명하지 못하였으나, 전쟁 피해에 따른 사망 사실이 인정된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위령 사업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 국가는 전시에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며, 국내에서도 군인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인도법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의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다. 국가는 향후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미국이나 관련 국가가 생산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림 16>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현장



<그림 17>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현장
철책 오른쪽 언덕 부근이 당시 2채의 집이 서 있던 독가촌
자리이다.